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법제처에서는 2008년 초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http://easylaw.go.kr>)』을 구축하여 2018년 6월 현재 서술형 237건, 사례형 18건 등 총 255건의 생활분야에 관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대한 주요 궁금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빌려 그 주요내용을 차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http://easylaw.go.kr>)』에 접속하셔서 ‘프랜차이즈(가맹계약)’ 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01

Q | 회사를 그만두고 프랜차이즈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 네.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에 여러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프랜차이즈 본사 즉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수록한 “정보공개서”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

- ☞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 ☞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서,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의 사실 여부 확인

- ☞ 가맹본부가 실수로 내용을 빠뜨리거나 고의로 거짓된 내용을 제출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등록과정에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사실 여부까지 모두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거나 확인하려 할 경우 가맹점(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까운 지점, 직영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먼저 창업을 한 사람에게 가맹본부가 약속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래도 불안하다면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물론 가맹본부의 신뢰도, 점포입지, 사업전망 등 다양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02

Q | 프랜차이즈 김밥집을 차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옆옆건물에 같은 프랜차이즈 김밥집이 들어선다고 해서 본사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개설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만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1항). 계약서에 이에 대한 사항이 있는지, 상권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는 없는지 확인하시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2항), 계약의 이행을 가맹본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셔서 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항). 분쟁조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가맹사업거래 부분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1항).



☞ 다만,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2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

-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위에서 열거한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3항).

03

Q |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차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약 시에는 경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매년 홍보활동 지원 등을 약속했었는데, 이런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가맹본부에서는 지원을 받으려면 별도의 금액을 다시 내라고 하는데 이게 정당하나요?

A | 아닙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제41조제2항제1호).

●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2).

- 영업지원 등의 거절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금지

- 부당한 계약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 금지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2).

유형	세부기준
가격의 구속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해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행위 -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 사전 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
거래 상대방의 구속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판매제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영업지역 준수강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
영업활동 제한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 사업주는 다음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연령차별로 보고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유형	세부기준
구입 강제금지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부당한 강요금지	-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금지	-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경영의 간섭금지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판매목표 강제금지	-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불이익 제공금지	- 위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가맹본부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다음과 같이 정한 기준에 비해 과중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유형	세부기준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 간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의 지연 시 지연경위,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물품의 원시적 하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까지도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배상의무를 모두 부담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그 밖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 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의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을 통해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5호).

04

Q | 가맹본부로부터 “준수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지통보를 해도 되는 건가요?

A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과 “그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만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진정을 이유로 한 해고 등 금지**

☞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활동을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나)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 유지 및 상품진열



- 다)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 라) 다)에 따른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 마)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 바)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 사)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 아)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사)에 따른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의 허용
- 자)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 차)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 카)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 타)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05

Q | 가맹본부가 계약 내용 중 영업지역 설정에 대한 내용을 위반하여 영업에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 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계약내용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②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37조의2제1항).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계약내용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②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37조의2제1항).

● **분쟁조정**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

1. 분쟁조정신청서
2.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4.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 손해배상 책임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가맹본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의 전체적인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7조).

